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1036호 2016년 12월 7일(수)

조 례

- 속초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 2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507호

속초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목표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이 달성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 이유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적정 공급량을 초과한 사업구역은 감차계획을 수립한 후 보상을 통해 감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감차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신규면허 발급시점도 길어져 택시 근로자들의 근무의욕 저하가 우려되어 연도별 감차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15.12.31) 됨에 따라, 연도별 감차목표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